

북한인권법 제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¹⁾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이화여대 평화학연구소 연구교수)

- I. 여는 말
- II. 법안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 III. 법안 검토
- IV. 북한 인권 개선 원칙과 대안
- V. 닫는 말

I. 여는 말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 등 20명의 의원들(한나라당 19명)이 작년 2008년 12월 26일 '북한인권법안'을 제안하여 지난 2월 해당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4월 14일 공청회를 가졌다. 이 법안은 기존의 황진하의원 대표발의의 '북한인권증진법안'과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의 '북한인권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북한인권 실태의 심각성과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한국의 역할이 미진하였다는 점에서 북한인권법안의 제정 취지는 십분 이해할 수 있다. 또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부터 북한인권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책 비중을 높일 것을 주장해온 점을 상기할 때, 집권당이 된 이후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그런 입장을 구체화하는 것에는 일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 유엔과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국회에서 그와 발맞추려는 입장 역시 공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인권법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북한인권법 제정이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이바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을 검토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이 법안 제정시 두 가지 상반된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았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국내적으로는 …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이 높아지고, 향후 국정의 주요 과제로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대북 압박의 상징적 요소로 북한 당국에 인식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북한 당국의 반발과 남북관계의 경색, 그리고 체제 위협을 의식한 북한주민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 등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북한인권법안의 내용과 그것이 나타낼 효과를 검토하면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판단을 내려보고, 이것을 계기로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II. 법안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모든 이에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식량·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고, 북한체제하에서 북한주민은 가혹한 인권유린으로 고통 받고 있음. 이 법은 식량·의약품의 제공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그 지원이 필요한 북한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확보와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1)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2) 국가는 모든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이들의 개인적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함(안 제3조).
- 3)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 4) 통일부장관은 3년마다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집행계획을 수립·실천하도록 함(안 제6조).
- 5) 정부는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증진활동에 협의·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둠(안 제7조).

6) 국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정치적·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는 등을 조건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8조).

7)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인적교류·정보교환 등 관련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8) 북한인권 침해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9)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실태조사 및 보고는 「헌법」 제10조 이하에 규정된 기본권의 유형별·내용별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함(안 제11조).

10) 국가는 남북간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강화를 통한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3조).

11) 정부는 북한주민지원과 북한주민인권증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Ⅲ. 법안 검토

가. 취지에 관하여

1) 북한인권 실태의 심각성과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한국의 역할이 미진하였다는 점에서, 북한인권법안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는 만시지탄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입법부의 활동 중 그 핵심이 입법 활동이고 모든 정책 역시 법적 근거를 갖고 전개할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그동안 한국의 북한인권정책이 미진하였다고 한다면 그 일차적 원인이 입법화 하지 않는데 있는지, 또 북한인권정책을 입법화 하여 전개할 경우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그에 앞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입법부의 노력이 입법 활동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받는 것이 전부인지 등에 대해서는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법안 내용에 관하여

1) 법안의 기본취지는 한국의 북한인권정책이 북한문제의 특수성보다는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정책방향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은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면서도 전략적 접근을 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남북이 불안정하게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인권문제 제기를 체제전복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어 정부의 공개적인 대북 인권개선 요구는 자칫 남북관계의 불안정(긴장고조)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책이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공개적 요구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렇다고 전임 정부가 북한 인권에 무관심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 정치적 권리의 증진을 위해서도 경제개방과 시장경제 확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포용정책을 전개하였고,

▶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최우선 고려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였고,

▶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관계 경색을 감수하고 입국 희망 탈북자를 전원 수용하였고,

▶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비공개적인 방법을 포함한 다각적인 노력을 벌여 입국시킨 바 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였고,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도 중단되어 있다. 물론 탈북자 수용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이한 것은 과거에 비해 정부와 여론을 포함하여 북한의 자유권(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 정부·여당이 북한인권정책을 보편성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규범적 판단이 현실에서는 북한이라는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하고, 다른 여러 측면에서도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북한인권정책을 여타의 대북정책과 무관하게 전개한다는 가령 제4조와 같은 판단 및 규정은 비현실적이라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인권의 일반적인 속성을 구체적인 인권정책 방향 그 자체로 삼을 때 교조주의의 폐해는 예상되었는지도 모른다.

2) 법안의 제1, 2조를 살펴볼 때 법안이 간주하는 북한인권 범주는 주로 북한 내의 인권, 곧 협의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인권 범주는 북한 내의 인권과 탈북자 인권, 남북간

인도적 사안 등 광의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의 일부 관련 법안에서는 광의의 범주를 적용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법안은 북한인권을 협의의 범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를 알 수 없다. 북한인권을 협의, 곧 북한 내의 인권문제로 정의할 경우 우리정부의 통치행위 혹은 정책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과 그럼에도 정책 추진을 시도할 경우 북한의 반발 혹은 북한과의 충돌이 예상돼 소기의 정책 효과가 발휘되기는 극히 난망할 것이다. 또 북한인권을 협의로 간주할 경우 탈북자와 남북 인도적 사안과 연루된 사람들의 인권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들의 인권문제 역시 중요하고, 북한 내의 인권보다 우리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더 높다. 현실을 고려할 때 광의의 북한인권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그러나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호 노력을 통해 북한 내의 인권문제로 접근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동 법안은 이러한 고민이 미흡해 보인다.

3) 국회의 행정부 견제는 민주 국가 혹은 탈냉전기 들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에서 동 법안 역시 그런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가이익과 직결되는 외교안보정책의 경우²⁾, 행정부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대한 라디오 방송(103조), 북한정부에 대한 인도적/비인도적 지원(202조) 등 몇 가지 주요 사항에 관해서는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행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동법의 집행과정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안에서는 그런 점들을 찾을 수 없고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를 단순히 견제 관계로 보는 경직성을 보임으로써 정책 집행 과정에서 유연성의 여지를 차단하여 법안의 취지를 실현하는데 난관을 초래할 우려를 안고 있다.

4) 또 법안이 암시하고 있는 인권관, 북한인권 실태 평가,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해서도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법안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북한체제하에서 북한주민은 가혹한 인권유린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북한체제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북한인권 실태가 발생한 요인들 중 특정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는데 이는 균형적 판단이라 하기 어렵고 법안의 정책효과를 처음부터 약화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북한인권 실태를 그와 같이 주관적, 일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법안의 표현 양식으로도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나아가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제8조는 (미국 북한인권법에서 ‘의회의 입장’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제시한 조건을 이유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혼란

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법안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대북 인도적 지원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혼돈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인도적 지원은 무조건성의 원칙에 의해 진행되는바 제기한 문제(조건)는 지원과정에서 지원측 및 피지원측 간의 상호신뢰의 수준과 지원사업의 계약내용, 지원 방식의 관행 등을 반영하여 제고해나갈 문제이지, 그것이 인도적 지원의 여부와 그 규모를 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 제8조 2항과 5항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5) 법안은 통일부를 정부의 북한인권정책 주무부서로 상정하고 여러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민족의 지상 과제를 고유사명으로 하고 있는 부처인데, 법안은 거기에 특정 보편적 문제를 내세워 헌법이 부여한 통일부의 사명에 장애를 조성할 우려를 갖고 있다. 보편성이 강조되는 북한인권문제는 정부가 관련 부처 합동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함이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부를 북한인권 주무부서로 삼는 발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환경 조성을 일차적 임무로 하는 통일부의 위상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고, ▶통일부의 대북 교섭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는 북한인권의 실질 개선에도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오히려 통일부의 기본 위상과 역할을 유지하고 그 속에서 북한인권정책을 관장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고 보느냐, 이와 관련해 북한인권을 위한 기본계획(제6조)은 별도로 수립, 추진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거하여 전반적인 대북정책의 틀 속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정책 효율성과 효과성 양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2005.12.29 제정)은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남한과 북한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다루면서(제13조), 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제9조)고 밝히고 있다.

법안은 또 통일부의 북한인권 교육홍보사업도 새로운 법에 규정할 과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정책 관심과 비중 제고로 그 효과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6)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제7조)를 두고 관련 역할을 부여하는 문제 역시 그 역할이 관련 부처의 기존 업무와 다르지 아니하고, 기존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대사의 실제 역할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한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미국의 북한인권대사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의해 비상근직으로 설치되었으나 임명된 레프코위츠(Jay Lefkowitz) 대사는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일이 있을 때 북한인권 관련 비난성

발언을 한 것이 전부이고, 2008년 연장된 ‘재승인 법안’은 북한인권대사직을 정규직으로 하고 직급도 승격하였으나, 아직 임명되지 않았고 또 그 권한과 집행예산은 줄어들었다.³⁾ 일본의 북한인권대사는 그 역할을 찾아보기 어렵고, ‘북한인권법’ 자체가 납치자 문제와 관련한 대북제재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7) 북한인권기록보존소(제10조)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것은 국가인권위의 성격과 현실 적용범위,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오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고 세금을 이중으로 사용하는 낭비라는 비난을 살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정하고 있다(인권위법 제4조). 최근 헌법재판소 (05.6.30. 선고, 2003헌바114) 및 대법원(04.11.12. 판결, 2004도4044) 판례는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북한에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권고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문제를 소관사항으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다. 과거 분단시절 서독이 동독 접경지대였던 잘츠기터(Salzgitter)에 중앙법무기록보존소를 설치하여 동독측의 인권침해를 감시 기록하였는데, 그 기관은 서독 법무부 소속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8) 민간단체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제14조)은 민간단체의 비정치성,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관한 정부의 통제 및 간섭 의혹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한 지원을 제외하고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북한인권 문제든, 무슨 문제든 상관없이 민간단체는 정치적, 재정적으로 독립을 견지하는 것이 단체의 생명이고, 그 단체가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과 이상을 실천해나갈 수 있다. 오늘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가 폭넓은 공감대를 보이고 있고 실제 각종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선명성 경쟁, 조직 확대 등으로 난립이 우려될 정도이고 극히 일부이지만 북한인권운동의 도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 마당에 북한인권 개선을 명목으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인권운동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9) 북한인권자문위원회(제5조)를 통일부에 설치하는 것과 위원 2/3 이하를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현실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는 위 8)의 지적과 함께 민간의 북한인권운동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낳을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위원장과 위원은 민간이 대등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IV. 북한 인권 개선 원칙과 대안

가. 북한인권 개선 원칙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 곧 북한인권정책은 구체적인 정책 방안과 수단을 포함하는데 그것을 말하려면 북한인권에 접근하는 원칙과 방향을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인권의 복잡성과 민감성을 고려할 때 보편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하되, 북한내 조건과 대외적 환경 등을 고려해 관련 행위자간 협력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접근해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 국제인권 원리 준수

북한인권 개선은 세계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인권문제와 마찬가지로 보편성을 비롯한 국제인권원리에 입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인권이 체제의 이념 실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 존엄성의 가능성을 경계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국제인권 원리에서 특정 국가의 인권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적합하다 할 것이다. 이럴 경우 해당국인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상대주의적 입장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체제에 대한 불신과 인권의 보편성을 절대성으로 극복하여 접근하는 방식 모두를 극복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의 일원이라는 점, 특히 4개 국제인권규약 가입국이라는 사실도 북한인권을 국제인권원리에 입각하여 접근할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다.

나아가 국제사회가 특정 국가의 인권문제에 관여할 때 존중과 상호성의 정신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인권 원리가 올바르게 균형 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의 보편성이 절대성으로 잘못 인식되어서 곤란하듯이, 인권의 총체성과 상호의존성에 입각하여 특정 인권을 선택적으로 강조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경계하여야 한다. 또 인권은 인류가 지향하는 가치이자 목표임과 동시에 그 달성 과정과 수단의 선택 있어서도 견지해야 할 준거이므로, 인권 개선을 명분으로 물리적 방법이나 강제를 행사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2) 인권과 평화의 조화

국제연합 헌장의 기본정신과 한반도의 전쟁 경험 및 군사적 긴장상태의 지속은 북한인권 개선이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유엔은 평화와 인권 그리고 개발을 3대 기치로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도 평화는 인권의 전반적 실현의 필수요건이자, 구체적으로 생명권과 생존권의 실체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한반도의 정전상태, 미국의 대북 안보위협, 북한의 핵개발 등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남북한은 물론 세계평화에 도전이 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북한인권 개선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인권 개선 없는 한반도 평화는 공허하고 한반도 평화를 무시한 북한인권 개선 역시 무의미하다.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 실현해나가야 할 동시 과제이다.

3) 실질적인 인권개선

북한인권을 둘러싼 모든 논의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복무하여야 한다.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추구함에 있어서 북한이 사회주의국가이고, 안보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저발전 상태에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지적은 북한인권과 같은 국가 차원에서 인권 개선이란 인권 피해자 개개인의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개별 인권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구조적 인식과 접근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북한인권은 이론적으로는 인권의 총체성을 재인식하고 전반적 인권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관찰대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인권의 범주를 확대하고 인권 분야간 상호연관성 하에서 국제인권의 발전을 내다볼 수 있는 중대 계기가 되고 있다.

실질적 인권개선의 원칙에서 볼 때 인권 모니터링 작업은 인권침해 현상에 한정하지 않고 인권을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움직임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가령, 북한인권을 문제삼아 북한정권을 압박하거나 심지어 정권교체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당사자인 북한(정부와 인민)의 존재 및 그 역할 무시, 북한정권의 반발, 예기치 않은 분쟁 발생 우려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인권개선에 기여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인권을 목적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과정 및 수단 차원에서의 인권을 무시하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 또 북한인권 개선을 특정 분야에만 한정하고 특정 방법에만 의존하는 것- 가령 생존권 회복을 위한 인도적 지원 -도 북한의 실질적 인권개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경우는 인권의 상호의존성을 간과하고 인권과 인도주의를 혼동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질적 인권개선의 원칙에서 볼 때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정책은 얼마나 북한인권을 거론하였느냐가 아니라 북한의 인권개선에 얼마나 이바지하느냐로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 평가는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권을 목적, 과정, 수단 등 세 차원에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협력적 인권개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실질적 개선에 기여하고 실질적 개선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려면 북한이 스스로 인권을 보호·증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높아야 한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정책은 북한 스스로의 인권개선 과정을 감시하고 촉진하는 조력자의 역할이 적절하다. 북한에 대한 우월감이나 적대감 혹은 북한인권에 관한 비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

과잉 개입은 인권개선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비인권적(심지어 반인권적)인 방향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점은 많은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제사회가 특정 국가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 방향과 경험을 전달하고 모니터링 하는 역할은 해당국의 인권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와 같은 촉진자 역할과 달리 외부적 힘이 해당국의 인권개선을 책임지겠다, 그 길을 다 만들어주겠다 식의 접근은 해당국의 인권친화적인 역사, 문화, 제도에 대한 무시 그리고 해당국의 인권 향상 의지 및 능력에 대한 불신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외부의 과잉개입은 해당국의 반발 가능성과 그 나라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해당국의 인권문제에 항구적으로 관심을 갖기 어려운 한계 등으로 그 실현가능성도 대단히 낮다. 보다 바람직한 국제사회의 입장은 인권문제가 심각한 국가가 인권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길을 돕는 역할일 것이다.

민주화, 분쟁 해결 과정과 마찬가지로 인권 향상 역시 당사자의 의지와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인권 향상을 위한 긍정적 조건으로서 국제적 지원은 이차적이다. 특정 국가의 인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런 식의 역할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국제인권문제로서 해당국의 인권은 해당국과 국제사회가 협력적 방식으로 순조로운 개선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협력적 방식의 접근은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해당국과 국제사회 사이의 정치적 계산과 갈등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나. 대안적 의견

1) 법안의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발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국회가 다음과 같은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회도 그 역할이 높아져야 하는바 입법, 공청회, 정책토론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및 소속 의원실의 정책개발, 여론 수렴 등 다양한 방법을 균형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 북한인권 관련 인식 차이를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북한인권정책은 크게 보면 남북관계와 국제사회를 두 축으로 활용하여 전개될 것이므로, 남북관계 개선과 국제협력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크다. 이와 관련해 남북관계 발전법에 근거하여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초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외교정책은 유동적인 국제정세와 다양한 정책 분야를 고려하여 정부의 유연한 정책대응을 보장하는 연장선상에서 북한인권정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이다.

2)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그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측면들을 고려하고, 또 관련국의 유사 입법 사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아야 할 것이다.

3) 국회는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이상의 점들과 함께 ▶포용정책을 추진하며 동독의 인권개선을 추구해온 서독의 경험,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북한인권 관련 주장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데 비해 실질적 개선은 크게 미흡한 이중적 현상에 대해서도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4) 최근 국내외 일각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으로 냉전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헬싱키 프로세스⁴⁾를 원용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런 주장의 핵심은 ▶가령 6자회담에 북핵문제만이 아니라 북한인권문제도 다뤄야 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적 압력을 보다 강하고 지속적으로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주장은 두 가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헬싱키 프로세스를 북한인권문제에 적용할 경우 헬싱키 프로세스가 가능했던 조건, 곧 헬싱키 최종의정서(Helsinki Final Act)의 채택 배경과 그 내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헬싱키 의정서 채택은 공산 진영의 정치적·군사적 영향권과 경제·기술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가운데 유럽 전역에 걸친 양진영간 평화공존 합의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다. 의정서 중 10대 원칙은 그런 점들을 담고 있었고 그 속에 서방측이 강조한 인권 존중(제7원칙), 평등권과 자결권(제8원칙)을 포함시킬 수 있었다. 요컨대, 북한문제를 다루는 역내 다자안보협력 협의체에 북한인권을 의제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이해관계를 포괄하는 큰 틀, 그에 앞서 상호 최소한의 신뢰 구축과 협력의 '습관'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반도에 헬싱키의 경험을 적용한다면 그 조건 조성이 순서라 하겠다.

둘째, 냉전기 유럽과 현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 및 불신의 정도가 크게 다르고, 특히 한반도에서 관련국 간 세력 및 이익 분포의 불균형이 심하다. 남북한 대립, 중국과 일본의 불신, 미국에 대한 동북아 국가들 내의 의구심, 특히 북한의 높은 위협인식, 그리고 북한 핵문제의 장기화 등 한반도를 포함해 동북아에서는 군사안보문제의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헬싱키 방식을 동북아, 좁게는 북한문제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을 말해준다. 6자회담을 북한핵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그 후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구상은 그런 배경 하에서 이해할 수 있다.

5) 결론적으로 북한인권법을 별도로 제정하기보다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거해 전략적으로 접근함이 입법 취지와 실효성에 부합한다고 본다.

V. 닫는 말

1) 전체적으로 법안은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구체화 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정부의 기존 관련 정책을 재구성하거나, 신규 사업의 경우 정책의 경직성을 가져오거나 중복사업이 예상되고, 북한의 반발을 살 것이 예상된다.

2) 미국과 일본의 유사 법률의 시행과정에 비추어볼 때 동법안은 결국 북한인권의 실질개선보다는 자기만족적일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인다. 또 발의 의원들이 특정 정당에 편향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정치적 논란을 초래하는 등 그 폐단이 적지 않게 예상돼 동법안은 폐기하고 다른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북한인권법 제정을 둘러싼 이상의 논의는 결국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방법을 둘러싼 논의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려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과 개선 과제를 공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은 매우 폭넓은 범위에 걸쳐 있지만 인권의 총체성과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때 자유권과 사회권을 함께 보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즉각적인 인권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그런 분야에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비인간적인 처우와 식량부족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이 포함된다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포함한 모든 북한인권정책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의해 판단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수단면에서 압박과 포용을 병행하여야 할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인권 상황도 개선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09/05/29)



* 별첨

북한인권법안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39
----------	------

발의연월일 : 2008. 12. 26.

발 의 자 : 윤상현·황우여·황진하
이경재·김소남·김효재
한선교·이한성·구본철
김성희·이화수·신지호
김옥이·조전혁·박상돈
김성수·양정례·정갑윤
진성호·현경병 의원
(20인)

제안이유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모든 이에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식량·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고, 북한체제하에서 북한주민은 가혹한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음.

이 법은 식량·의약품의 제공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그 지원이 필요한 북한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확보와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는 모든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이들의 개인적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 라. 통일부장관은 3년마다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집행계획을 수립·실천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정부는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증진활동에 협의·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둠(안 제7조).
- 바. 국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정치적·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는 등을 조건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8조).
- 사.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인적교류·정보교환 등 관련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 아. 북한인권 침해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실태조사 및 보고는 「헌법」 제10조 이하에 규정된 기본권의 유형별·내용별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함(안 제11조).

- 차. 국가는 남북간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강화를 통한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3조).
- 카. 정부는 북한주민지원과 북한주민인권증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북한인권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국가는 모든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이들의 개인적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북한인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북한인권자문위원회) ① 북한인권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분의 1이상은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북한인권을 위한 기본계획) 통일부장관은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북한인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2. 북한주민의 인권증진 방안
3. 북한 내의 인권실태 및 증진에 관한 국내외 교육 및 홍보
4.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

5. 그 밖에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업무에 관하여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북한인권대사) ① 정부는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증진활동에 협의·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둔다.

② 북한인권대사는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활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북한인권대사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도적 지원) ① 국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될 것
2.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게 전달될 것
3. 지원을 받는 북한주민이 그 지원의 제공자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4. 정치적·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할 것

② 국가는 제1항의 지원 외에 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도 제1항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식량·의료품 등의 지원과 함께 비료·농기계의 지원, 농업기술의 지원 등의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북한주민 스스로 기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인도적 지원 업무 또는 활동에 종사하는 국내 기관·단체 간의 역할을 분담·조정한다.

제9조(북한인권을 위한 국제적 협력)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인적교류·정보교환 등 관련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북한인권기록보존소) ① 북한인권 침해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

② 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소관 업무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국회보고)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중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보고는 「헌법」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에 규정된 기본권의 유형별·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2조(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 내 인권실태와 인권증진방안에 관한 대국민교육 및 홍보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 관련 사항을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에 따른 통일교육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남북교류·협력의 강화) 국가는 남북간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강화를 통한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단체의 활성화 및 지원) ① 정부는 북한주민지원과 북한인권증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기타 지원 기준 등 민간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원의 안정적 확보) 정부는 이 법이 규정한 국가의 책무 및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북한인권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5조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자문수당
- 제7조 북한인권대사임명
- 제10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 제11조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보고
- 제12조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 제14조 민간단체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작성
- 북한인권 실태조사, 교육·홍보, 민간단체 지원 등은 제외

3. 비용추계의 결과

- 향후 5년간 4,357백만원 이상의 예산소요 발생 추정
- 북한인권 실태조사, 교육·홍보, 민간단체 지원 등은 세부방안 마련 후 예산책정 가능

4. 작성자:

윤상현 의원실 김종현 보좌관(02-788-2805)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자문수당(안 제5조) = 3,000만원

- 25만원×12회(월 1회)×10인 = 3,000만원

나. 북한인권대사(안 제7조)

현재 외교통상부는 인권대사(대외직명대사)를 두어 국내외 인권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을 대

표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북한인권을 전담하고 있지 않아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무공무원 신분의 북한인권대사가 신규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5)

외교통상부에 외무공무원 신분의 에너지자원대사, 재외동포영사대사가 고위공무원단 “나”급으로 보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인권대사도 이에 준하여 보직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무원단 “나”급의 연간 급여가 “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에 따를 경우 약 9,800만원에 이르고, 외교통상부 본부의 인건비 대비 기본운영비의 비율이 74.1%(2007년 결산기준)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 소요액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북한인권대사 임명에 따른 소요액

(단위: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인건비	105	113	121	129	138	606
운영비	78	84	90	96	103	451
합 계	183	197	211	225	241	1,057

주: 1. 고위공무원 “나” 급 기준으로 2009년 예산안편성지침, NABO 재정기준선 전망 보고서, 2007년 외교통상부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추정한 값임.

2. 외무공무원인 에너지자원대사, 재외동포영사대사는 외교통상부 해당 부서의 지원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사업비를 추정하지 않았음.

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안 제10조) : 6억 3,000만원

○ 보존소 신규필요 인원을 5인으로 가정함.

- 인건비 : 3,000만원×5인=1억 5,000만원

- 사업비 : 4억원

- 자산취득비 : 600만원×5인=3,000만원

- 운영비 : 5,000만원(인건비의 약 3분의 1을 적용)

라.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보고(안 제11조)

○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범위에서 활용

○ 필요시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예산 별도 지원

마.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안 제12조)

-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교육·홍보는 국민대상 및 북한주민 대상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그 세부방안 마련 뒤 예산 책정

바. 민간단체 지원(안 제14조)

- 민간단체 지원은 현재 정부에서도 단체의 규모, 지원 성격에 따라 차이를 두어 많은 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 현재 집행되고 있는 정부의 지원을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북한인권과 인도적 지원에 부합하는 단체를 선별해 집중 지원하도록 하며 현 지원기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

※코리아연구원은 회원님들의 정성어린 기부금으로 연구활동을 전개하며,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합니다. 후원 및 회원등록은 전화(02-733-3348),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본 원고는 2009년 5월 27일에 개최된 제99회 홍사단 통일포럼에서 발표한 글로, 저자의 동의하에 게재합니다.
- 2) 우리의 경우 여기에 대북통일정책을 포함하여 논의할 수 있다.
- 3)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2008)은 북한인권대사의 권한을 이전의 탈북자 정책 ‘조정’에서 ‘참여’로 수정하였고, 관련 예산도 4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삭감하였다.
- 4) ‘헬싱키 프로세스’란 1975년 8월 1일 헬싱키 CSCE 정상회의에서 헬싱키 최종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합의사항의 구체화 및 이행을 향한 일련의 전개과정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헬싱키 의정서는 원칙 및 안보, 경제 및 과학기술, 인도적 문제 등을 세 바스켓으로 담고 있다.
- 5)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대사 1명이 증가하더라도 다른 대사를 보조하는 비서가 업무를 분담하여 추가적인 인력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임.